■ 법률 칼럼

미국에서의 자선 사업 운영 : Charitable Solicitation Registration

말 그대로 자선(慈善) 사업을 펼치는 비영리단체는 주로 기부금을 통해 운영된다. 보통 자선사업이라고 하면 소규모 개인 사업자나 소비자 단체, 혹은 구호단체를 떠올리고는 하는데 교회나 학교, 병원, 사단법인 연구소 등의 납세의무의 범위가 좁은 법인들도 이에 해당된다.

일단 영리나 비영리의 목적을 떠나서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연방정부, 주정부를 비롯한 각 지역의 지방정부들을 여러 단계를 걸쳐 상당히 복잡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비영리단체나 법인의 경우 세금 공제 혜택이 따르기 때문에 설립에서 해산의 순간까지 모든 단계에서 일반 법인보다 더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기금 마련을 위한 모금 사업 역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주정부의 법률적 제한이 있다.

미국에는 50개의 주와 1개의 특별구(District of Columbia)가 있는데, 그 중 44개 주의 기금 모금법에 차이가 있다 보니 각 주마다 다른 방식의 구체적인 법률로 비영리단체의 모금 방식에 따라야 한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모금 활동 시작 후 30일 이내에 등록하는 것이 허가된다.

즉, 한 단체가 주요 사업장을 벗어나, 타주에서 모금 활동을 수행할 계획이 있다면 타주의 주정부에 또 등록을 하여야 하며, 만약 전국적으로 모금 행사를 벌인다면 해당되는 모든 주정부들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에 대한 불편함을 간소화하기 위하여 The Unified Registration Statement (URS)가 탄생 되었는데, 이는 각 주 별로 천차만별인 등록 과정을 일원화시키기 위하여 모금 시행 전 주정부에 등록을 요구하는 40개 주 중 32개의 주에서 인정하는 양식 제도이다. URS 양식을 한번 제출했다면, 이를 수용하는 타주에는 복사본만 제출하면 된다는 개념이다.

단, URS를 수용하지 않는 13개 주에서는 추가의 양식을 요구할 수 있다. (콜로라도, 워싱턴DC, 플로리다, 메인, 네바다,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그리고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는 예외다).

대부분의 주정부는 비영리 단체의 경영과 재무제표를 매년 검토하는데, 기금 모금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Charitable Solicitation Registration 역시 예외는 아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등록 요구 사항에서 제외되는 특정 비영리단체들 (종교, 의료, 교육 기관들이 이에 해당된다) 역시 제외 대상이 되기 위하여 매년 신청서를 제출, 갱신해야 한다.

주정부에 등록하는 절차는 필수사항이지 선택사항이 아니다. 그러므로 매우 소액의 모금 활동이 아닌 경우 이러한 규정에 불응할 경우는 불법 모금으로 간주되어 처벌이 따를 수 있는데 그에 따른 처벌의 형태 역시 주마다, 그리고 불응의 형태나 정도에 따라, 그 대가가 일시적 벌금, 이사회나 간부의 형사처벌, 해당 단체의 세금 면제 혜택이 취소, 혹은 되돌릴 수 없는 부정적인 여론의 형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지연 변호사
(Jeeny J. Lee, Esq.)
JL Bridge Legal Consulting 대표변호사
info@jlbridge.com
www.jlbridge.com
(949) 535-5275

■ 법률 칼럼

OPT신청 시 유의해야 할 날짜

최근 OPT기각 결정을 들고 저희 오피스에 도움을 청하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그런데, 기각 사유를 살펴보면 이외로 심각한 이유가 아니라 OPT신청 시 특별히 신경 써야 하는 아래 날짜들을 제대로 체크하지 못했기 때문이어서 안타까움을 자아냅니다.

1. OPT신청 시기

이민국은 150일 window (I-20 프로그램 날짜 종료일 기준으로 이전 90일부터 이후 60일) 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window이전이나 이후에 OPT신청을 하면 안 됩니다. 프로그램 날짜 종료일 이후 60일은 F-1 Grace period에 해당하는 기간입니다.

2. Date the DSO enters the recommendation of OPT into his/ her SEVIS record

외국인 학생들은 학교에 들어가면 DSO를 지정 받게 됩니다. DSO는 외국인 학생들의 신분 관련 이슈나 학교 생활에 적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일들을 하는 international office의 직원들입니다. OPT를 신청하기 위해 DSO는 SEVIS시스템에 OPT recommendation이라는 상태를 입력하게 되는데 이 입력하는 날짜부터 30일이 지나 보내진 신청서는 무조건 기각 됩니다. 이 날짜와 관련된 사유가 최근 가장 많이 보여지는 기각 사유입니다.

2번의 사유로 인한 기각된 경우, 본인이 아직 F-1 Grace period안에 있다면 생각보다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OPT recommendation날짜를 수정해서 새로운 I-20를 받고, 그 새로운 recommendation date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OPT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물론, 이러한 절차를 위해 DSO의 도움은 절대적입니다. 이전에 SEVIS 시스템에 입력한 recommendation 날짜를 취소하고, 다시 새로운 날짜를 입력하는 일은 DSO만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평소 학교 생활을 하면서 DSO와 자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전에는 이민국이 날짜 규정을 어긴 신청서가 접수되면 새 I-20를 보내라는 보충서류요구서(RFE)를 발송해서 기가 결정을 유보했으나, 2012년 정도부터 이민국에서는 이러한 사유들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대처하고 있으며 바로 기각 결정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재심을 요청해 볼 수는 있으나 (Motion to reopen:I-290B form제출), 그 날짜들을 놓친 사유가 'extraordinary circumstance' 에 의한 것이었음을 증명하지 않는 한, 그 재심 요청이 받아들여져서 한 번 결정된 기각이 승인으로 바뀌기는 쉽지 않습니다.

몇 년간 시간과 학비를 투자해서 어렵게 취득한 학위를 실무에 제대로 사용해 보지도 못한 채, 정말 사소한 실수로 인해 한국으로 돌아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OPT신청 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몇 가지 중요한 날짜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함영심 변호사
Sky Law Firm, P.C.
www.skyuslaw.com
young@skyuslaw.com
TEL (714) 522-1033
6 Centerpointe Dr. #700
La Palma, CA 90623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천관우 변호사 그룹
이민법, 상법, 부동산법 전문
취업 영주권 상담 / DACA 연장접수
이민법 영주권 (취업 1,2,3순위 이민 – NIW, 국제적기업간부급, 간호사 포함, 결혼 및 가족초청이민, 종교이민)
각종 비이민비자 (H1B, R1, E2, E1, L1, F1, O, P, TN/TD비자 등), DACA, 601A Waiver, 245i
추방유예상담, J1 Waiver, 영주권 인터뷰, 재입국허가서, 영주권 재발급, 시민권 신청
부동산법 상업용 부동산 분쟁해결/강제퇴거명령(이빅션)/Title에 대한 분쟁-Quiet the title/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상법 계약분쟁 소송/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천관우 변호사
서울고•연세대•법학박사
가주 변호사 협회 정회원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josephlaw1224@gmail.com
☎ 상담문의
LA Office 213-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
OC Office 714-522-5220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